

등기구 제13378호

유효기간 : 2020-04-21~2023-04-20



고효율기자재

#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

## ① 업체명(법인등록번호)

(주)에스앤비라이팅 (170111-0481101)

## ② 사무소 소재지

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2길 6

## ③ 공 장 소 재 지

(주)에스앤비라이팅 :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2길 6

## ④ 인증기자재

기 자 재 명 : 등기구  
 형 식 : 실내용LED등기구  
 모 델 명 : SB-FL40-1230E  
 용 량 : 40W  
 호 율 : 광효율[lm/W] : 129

『에너지이용합리화법』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.

2020년04월21일

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



&lt;변경사항&gt;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

&lt;부속서류&gt;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등기구 제13378호

유효기간 : 2020-04-21~2023-04-20

<부속서류 1>

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의 특징

1. 초기광속[lm] : 5 396
2. 상관색온도[K] : 5 486
3. 연색지수[Ra] : 86
4. 역률 : 0.98
5. 전류 고조파 함유율[%] : 9.303
6. LED Package : LG 이노텍, LEMWS59R80GZ2D00
7. LED 컨버터 : (주)선일일렉콤, C2040S20-36N, KS(제10-0433호)

<부속서류>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등기구 제13378호

유효기간 : 2020-04-21~2023-04-20

<부속서류 2>

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
공 장 명	공 장 주 소	비 고
(주)에스앤비라이 팅	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2길 6	



<부속서류>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등기구 제13378호

유효기간 : 2020-04-21~2023-04-20

&lt;부속서류 3&gt;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

No.	발급일자	내용
7	2020-02-10	<유효기간연장>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
6	2018-07-05	<인증내용변경> 사무소주소, 공장주소 변경에 따른 재발급
5	2018-05-04	<인증내용변경> 당해모델에서 LED PCB, LED 컨버터, LED Package 변경에 따른 부품변경
4	2017-11-29	<인증내역변경>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(기존 인증번호 :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제 4711호)
3	2017-10-30	<인증내용변경> 당해모델에서 PCB, 외형, 확산커버, 컨버터, LED Chip 및 PKG, LED Chip 및 PKG 수량, LED PKG 배열 변경에 따른 부품변경
2	2017-02-10	<유효기간연장> 2017.02.06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
1	2014-04-21	<모델추가인증>

&lt;부속서류&gt;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